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미래) 계약학과(보건의료학 협동과정) 운영내규

제 정 2017. 09. 01.

개 정 2020. 11. 01.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운영내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의 범위 내에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미래) 계약학과(보건의료학 협동과정)(이하“대학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임교수)

대학원 학과 주임교수는 원주의과대학장(이하“학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3조 (업무)

대학원의 업무는 교학부에서 수행하며, 주요사항은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4조 (지도교수·심사위원 자격)

- ①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로 한다.
- ②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장은 원주의과대학 소속으로 하고, 공동 지도교수의 경우 최소 1명은 원주의과대학 소속으로 한다.

제 2장 계약학과위원회

제5조 (설치)

대학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약학과(보건의료학 협동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대학원 학칙과 내규에 따라 대학원장이 위임하는 사항과 계약학과(보건의료학 협동과정) 학사를 관장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단기과정과 연수교육 과정의 시행
3. 대학원 교수와 대학원생의 학술활동 기획 및 시행
4. 대학원 입학정원 및 입학전형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자격시험 사정

6. 대학원생의 교육, 연구, 논문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
7. 대학원생의 장학금 지급 및 복지에 관한 제반사항
8. 대학원 예산 결산
9. 기타 학장 및 심사평가원장이 위임한 사항 및 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10. 대학원 학과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의 구성 및 임기)

- ① 운영위원회는 대학원과 심사평가원이 위촉하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계약학과장(주임교수)으로 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소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의결)

-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장 입 학

제10조 (입학지원 자격)

모든 대학 졸업자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직자에 한해 보건의료학 협동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 (일반전형과 외국인전형 방법 및 평가)

대학원 입학 전형에 관한 절차 및 세부 사항은 일반대학원 규정에 준하여 적용하며, 서류 심사 및 구술시험에 대한 평가는 학과 선발 기준표(별표)에 준하여 평가위원이 개별적, 비공개적으로 한다.

- ① 서류심사평가(석사학위과정)

구분	점수
학업계획서	100
대학성적	70
경력	30
합	200

② 구술시험평가(석사학위과정)

구분	점수
전공에 대한 지식	40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30
전공에 대한 적성	30
합	100

- ③ 평가교수는 3인이상으로 선정하며 전형방법은 서류심사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구술시험을 시행하여 최종합격인원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합격사정은 평가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사정원칙에 따라 합격 제청을 결정하고 학과 주임교수와 학장이 이를 인증 날인한다.
- ⑤ 공인영어성적에 관해서는 대학원 일반전형 및 외국인학생 입학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기준과 일반전형 및 외국인전형 모집요강을 원칙으로 한다.
- ⑥ 기타: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내규, 대학원 외국인학생 입학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제10조의3 (입시 서류 관리 및 인수인계)

- ① 주임교수는 입시관련 내규 제정, 혹은 개정 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주임교수는 입학전형과 관련한 대학원 입시 진행 공문 및 지침에 따른 입시서류 등 중요서류에 대한 보관을 책임진다.
- ③ 보직 교체시 주임교수는 입시 업무관련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후임 주임교수와 학인 후, 서명 보관한다.
- ④ 인수인계서에는 주임교수로 재직시 시행된 입학전형에 대해서, 지원현황, 면접응시현황, 선발현황, 등록현황 등의 주요내용을 담는다.

제11조 (학위과정등록 자격)

대학원의 학위과정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나 받을 예정인 자 또는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직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제 4장 교육과정

제12조 (교육과목의 구분)

교과목은 공통필수와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제13조 (이수학점)

공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부과정에서 타학과를 졸업한 경우 필요시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의예·의학과 학부과정에서 보충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과목의 변경, 폐지)

교과목의 변경과 폐지는 교과목 담당교수 또는 학과 주임교수의 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5조 (담당교수 학점제한)

한학기에 교수 한명이 담당 가능한 학점은 전공선택과목에 한하여 3학점으로 제한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5장 자격시험

제16조 (자격시험의 구분)

자격시험은 영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제17조 (영어시험)

- ① 대학원생은 운영위원회가 주관하여 1년에 2회 영어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영어 시험은 70점(100점 만점) 이상일 때 합격으로 한다.
- ③ 최근 2년간 시행된 공인인증 영어성적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는 합격으로 한다.
- ④ 시험 시행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8조 (종합시험)

종합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분하며, 영어시험을 통과한 대학원생 중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최소 22학점을 이수한 자일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제19조 (종합시험의 응시과목)

- ① 석사학위 과정 : 전공선택 2과목

제20조 (종합시험의 시행)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은 같은 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 시간과 장소는 시험 1주일 전에 공고한다.

제 6장 학위논문

제21조 (지도교수의 선정 및 변경)

- ① 대학원생은 입학 후 1학기 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2인의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대학원생은 지도교수 선정 후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지도교수 확인서를 교학파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자문위원회 구성)

- ①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계획서가 제출되면 지도교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자문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도교수가 위촉한다. 위원에는 1인 이상의 해당분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3조 (연구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

- ① 자격시험에 합격한 대학원생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연구계획서 제출 전 연구윤리(Research Ethics)를 1회 이수해야 하며 대학에서 실시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② 연구계획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일반연구비 신청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연구내용이 사람 또는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제출 시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지도교수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가 승인된 후 1개월 이내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며, 대학원생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모든 자문위원은 자문보고서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한다.
- ⑤ 대학원위원회는 제출된 자문보고서를 검토하여 연구계획서 내용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원생은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연구계획서 변경)

- ① 연구계획서의 자문을 받고 같은 내용 및 방법의 연구를 진행 중 제목을 일부 변경할 때에는 학위논문 제출 이전(예비심사를 마친 후)에 지도교수가 자문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위원회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연구계획서의 자문을 받고 연구를 진행 중 다른 내용 및 방법의 연구로 변경할 때에는 연구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학기이상의 연구지도를 받아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얻을 수 있다.
- ③ 연구계획서의 자문을 받고 같은 내용 및 방법의 연구를 진행 중 지도교수의 변경이 부득이 할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5조 (학위논문 제출·심사)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자문위원들 중 1인을 자문위원회에서 위촉하며, 석사학위 논문 제출자는 지도교수 주관 하에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다.

제 7장 학위수여

제26조 (학위수여)

학위 수여는 학위논문 제출과 학위논문 대체로 할 수 있다. 학위 수여는 계약학과(보건의료학협동과정) 운영내규 시행세칙 학위 수여자격을 충족하도록 한다.

제 8장 기타

제27조 (내규의 개정)

이 내규를 개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 및 심사평가원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제28조 (세부사항)

이 운영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운영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2. 이 운영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운영내규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이 개정내규 「제4조, 6조, 12조 13조, 14조, 15조, 17조, 18조, 23조, 24조 개정 및 제 7장(학위수여) 신설」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 7장(학위수여)는 2018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 내규「규정명 변경, 제1조 개정」는 2019년 9월 1일부터, 제10조의2 신설, 제13조, 제23조 개정」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5. 이 개정 내규 「제6조 조문 및 제1호·제4호 내지 제9호 개정 및 제10호 신설, 제7조 제목 개정 및 제3호 신설, 제9조 제①항·제③항 신설, 제10조의2 제목 및 제②항 개정, 제

③항 내지 제⑥항 신설, 제10조의3 신설」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1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미래) 계약학과(보건의료학협동과정) 운영내규 시행세칙

제 정 2017. 09. 01.

개 정 2020. 11. 01.

제1조(목적)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을 준용하되 일반대학원(원주) 계약학과(보건의료학협동과정) 운영내규에 따라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한다.

제2조(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이수학점 및 수강해야 할 과목은 아래와 같다.(별첨자료 참조).

1. 공통필수과목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공통필수과목은 보건의료연구방법론, 통계학및역학 등으로 구성된다.
2. 대학원생은 지도교수 선정을 위하여 입학 후 개별지도연구를 수강하여야 한다.

제3조(영어시험)

1. 대학원이 주관하는 교내영어시험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시행한다.
2. 영어시험의 관련된 사항은 '영어시험소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3. 대학원에 재적하는 내국인이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를 위해 개인별로 교학파트에 신청하고 신청기간 내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불합격 횟수와 상관없이 응시자격은 유지된다.
5. TOEFL PBT 500점 이상, TOEIC 625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IELTS 4.5점 이상을 취득한자는 성적표 원본을 제출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성적표의 유효기간은 제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로 한다.

제4조(영어시험소위원회)

1.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영어시험의 문항출제, 시험감독,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영어시험의 문항은 객관식·주관식으로 구성한다.

제5조(구술시험)

1. 구술시험 위원은 해당 대학원생의 전공선택과목 담당교수 2-3인으로 구성된다.
2. 구술시험 결과는 익일에 발표한다.
3. 구술시험 불합격자는 1주일 후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제6조(연구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

1. 연구계획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법,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순으로 연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상연구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7조의2(자문보고서의 제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후 2주일 이내에 자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위논문 제출자격)

각 학위 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 취득학점의 총 평량 평균이 3.0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연구계획서의 승인 후 1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4학기 이상의 등록자

제8조의2(학위수여 자격)

1. 학위논문 제출자: 제 8조 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준하여 적용한다.
2. 학위논문 대체자: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않고 논문대체 교육과목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한다.
 - 가. 자격시험(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 후 학과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 나. 석사학위 교육과정 이수학점에 추가 6학점(평균 B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다. 5학기 이상 등록하여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자
3. 학위논문 제출에서 학위논문 대체로 또는 학위논문 대체에서 학위논문 제출로 학위수여 자격을 변경하고자하는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고자 하는 학위수여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 입학한 대학원생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2. 이 시행세칙 개정「제1, 3, 6, 7, 9조, 별표 개정, 7조의2, 8조의2 신설」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교육과정표는 별도로 정한다.
3. 이 시행세칙 개정「제 8조의2 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8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 시행세칙 「제8조의2」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5. 이 개정 시행세칙 「제3조」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1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교육과정표

본 대학원은 계약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협의하여 편성한다. 공통 교과목과 전공선택 교과목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과목 영역	국문명	영문명	과목개요	학 점	담당 교수
공통 필수	통계학	Statistics	질병의 발생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고, 빅데이터를 이 용한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향후 보건의료정책 및 건 강관리방안을 모색함	3	장세진
	보건의료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in health care	보건의료의 현상과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문제 형성, 가설형성, 연구설계, 자료수집 및 해석방법을 적용함	3	고상백
전공 선택	라이프 스타일의학	Lifestyle medicine	만성질환을 운동, 영양, 흡연, 수면, 스트레스 등 생활개 선 및 중재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생활습관의학	3	공인덕
전공 선택	보건의료정책	Health policy	care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외국의 보건의료제도를 비 교하고 국제협력, 장기요양서비스 등의 최근 보건 의료정책의 발전방향을 폭넓게 조망함	3	김춘배
전공 선택	만성질환의이 해	Chronic diseases	질병의 규모, 원인, 예방, 치료 및 관리 등 최근 우리나 라에서 질병부담이 크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요 질 병을 이해하고자 하는 임상의학적 접근	3	김상하
전공 선택	보건산업정책	Policy of health industry	의약품, 의료기기, Digital Health, 신의료기술 등 보건 의료관련 국내외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 보건 의료 설계를 하고 대응함	3	김성훈
전공 선택	보건경제학	Economics in health care	보건의료자원의 비용효과/비용편익 분석과, 자원이용 사전 예측 및 관리를 위한 경제학적 분석방법 적용	3	김춘배
전공 선택	병원경영	H o s p i t a l management	의료기관의 기획, 조정, 재무회계, 의무기록관리, 자 원관리 이론과 실무 전반을 통한 의료기관 경영전략 을 모색함	3	김춘배
전공 선택	임상질관리	Clinical Quality management	보건의료영역에서 국가,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 전 및 임상질 지표 개발과 관리를 위한 전략을 모색함	3	한병근
전공 선택	근거중심의학 (EBM)	Evidence based medicine	임상경험에 기초한 주관적 판단보다는 체계적인 연구결 과를 통해 얻어진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의학적 의사결 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이론 및 방법론 연구	3	고상백
전공 선택	질병진단 방법론	Diagnostic methodology of diseases	질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병리학적, 진단검사의학적 방법에 대한 최신 지견과 국내 외 현황에 대한 접근	3	정순희
전공 선택	질병기전연구	Underlying mechanism of diseases	질병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메카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기 초의학적 이해의 통합적 과목. 최근에 대두되는 정밀의 학, 시스템 생물학을 활용한 최신연구, 기초와 임상 간의 중개연구 등으로 포괄함	3	박규상
전공	포괄임상의	Comprehensive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질환을 중심으로 질환의 병인,	3	김장영

과목 영역	국문명	영문명	과목개요	학 점	담당 교수
선택 학		clinical medicine	진단, 치료, 예후에 대한 이해를 한다. 더불어, 최근 변화된 진단 및 치료를 중심으로 심화 학습함		
전공 선택	보건의료학 세미나	Seminar on health care	보건의료학에서 최근 대두되는 주요 이슈 또는 최신지견 을 공유하는 세미나	3	주임 교수
전공 필수	개별지도연구 1-3	Individual study1-3	대학원생과 교수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연구 주제, 창의적 내용 및 연구진행에 대한 의견교환 및 지도	2	주임 교수

